

※ 단체회원 자격 별첨 규정 ※

2024.07.16. 일부개정

1. 해당단체 신규입회 시 단체 대표자는 (사)한국연극협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2024.07.16.신설]
- 1.2. 해당단체 신규입회 시 ~~(사)한국연극협회 정회원 3명 이상이 작품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4개 이상의 공연실적 가운데 이사회일 기준 만2년 이내 2작품 이상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있어야 한다.~~
[2024.07.16. 일부개정]
- 2.3. 4개 이상의 공연실적 가운데 이사회일 기준 최근 만 1년 이내, ~~만 2년 1작품~~ 이상 자료에 대한 증빙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2024.07.16. 일부개정]
4. 4개의 공연작품 실적 가운데 이사회일 기준 만 2년 이상 연극활동을 증빙 할 수 있는 1작품 이상의 자료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2024.07.16. 일부개정]
- 3.5. 4작품 중 해당지역(최소 해당지부 2편, 해당지회 1편 이상)의 공연작품이 있어야 하며, 지부가 없는 지회는 해당지회 3편 이상으로 한다. [2024.07.16. 일부개정]
- 4.6. 공연실적을 산출함에 있어 동일한 작품일지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거나 다른 연출일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한다. [2024.07.16. 일부개정]
- 5.7. 해당지역이라 함은 광역단위 시·도를 포함한다. [2024.07.16. 일부개정]
- 6.8. 최근이라 함은 인준하는 이사회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024.07.16. 일부개정]
7. ~~경력단절 기간은 만 5년까지만 인정한다.~~ [2024.07.16. 삭제]
- 8.9. 공연작품이라 함은 연극의 일반적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공연으로
 - (1) 쇼, 퍼포먼스, 낭독극, 쇼케이스, ~~거리공연~~, 워크숍, 시민연극, 학생극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시민연극이라 함은 협회 소속 정단체 극단의 공연이라 하더라도 출연진 다수가 일반시민일 경우이거나, 시민행사를 목적으로 제작된 공연으로 일반시민과 함께 공연한 작품을 말한다. 학생극이라 함은 출연진 절반 이상이 다수가 학생이거나 학교행사 및 수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공연으로 재학생과 함께 공연한 작품을 말한다. 단, 재학생은 만 20세 미만의 ~~학생신분을 말한다.~~) [2024.07.16. 신설 및 일부개정]
 - (2) ~~낭독극, 쇼케이스, 거리(야외)공연~~, 아동(가족)극, 단막극의 경우 3편 2편을 1편으로 인정한다. (단, 거리(야외)공연, 아동극이라 하더라도 60분 이상의 일반적 범위 안의 공연은 1편으로 인정한다. 단막극의 경우, 20분 이상 50분 이내의 공연을 말한다)
[2024.07.16. 신설 및 일부개정]

(3) 신체극과 무용극, 국악극 등의 경우 협회 소속 연극 연출가에 의해 만들어진 공연은 포함한다.

9.10. 모든 공연작품의 적부판정은 심의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결정하여 ~~의사회~~
~~안건으로 선정된다.~~ 심의를 거쳐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한다. [2024.07.16.
일부개정]